

『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 변경에 따라, 조례 제명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- 「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」
⇒ 「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

○ 상위법 변경 반영(안 제1조, 제4조, 제6조)

- 「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」 ⇒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- 「지방재정법」 제65조 ⇒ 「지방재정법」 제78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15조 ⇒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

○ 용자 및 보조관련 조항 삭제(안 제8조, 제9조)

- 실효성 없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용자 및 보조 관련 조항 삭제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- 「지방재정법」 제78조, 제94조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이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(15.08.11. 시행)로 변경됨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제명을 「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」에서 「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로 변경하였으며
- 상위법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「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」을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로, 「지방재정법」 제65조를 「지방재정법」 제78조로, 「지방재정법」 제115조를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로 수정하였으며
- 실효성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용자 및 보조 관련 조항을 삭제 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상위법령인 「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」과 「지방재정법」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띄어쓰기, 용어정비, 실효성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용자 및 보조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